

(붙임1)

「길을 만드는 대학, 경기 대표 국립대학」

[2019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대상]

학사학위 취득유예 시행 계획

1. 관련

- 「한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 제131조(학사학위취득의 유예)

2. 목적

-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학사학위 취득대상이나, 개인사정 등으로 졸업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학위 취득유예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.

3. 주요사항

- 신청대상: 2020년 8월 졸업대상자로 **졸업요건을 모두 충족**하였으나, 학사학위 취득유예(졸업연기)를 희망하는 학생
- 신청자격: 아래의 사항을 **모두 충족**하는 학생
 - ① 2020년 8월 졸업예정 대상자
 - ② 정규학기 8학기 이상 등록한 자(건축학전공 10학기, 편입생 4학기 이상)
 - ③ 아래의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한 자
 - 공통사항: 학과(트랙)별 졸업 요구학점을 이수
(편입생 중 선이수 과목이 있는 사람은 선이수과목 반드시 이수)
 - 농업생명과학대학, 공과대학, 자연과학대학: **130학점** 이상
(단,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64학점 이상)
 - 인문사회과학대학: **120학점** 이상
 - ④ 학점 외 **졸업요건을 충족한 자: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인증 합격자**
- 신청기간: **2020. 7. 21.(화) ~ 7. 23.(목)**
- 신청서류: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서 1부, 성적증명서 1부
- 학사학위 취득유예 기간: 1개 학기(단, 1회에 한하여 신청 시 연장가능)

○ 신청방법

(신청자) 신청서 작성 ⇒ (학과사무실)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 확인
 ⇒ 소속 단과대학장 확인 ⇒ 신청서 방문 접수(학사지원팀)

○ 학사학위 취득유예자의 등록금 조건표

수강 학점	납입 금액	비고
미 신청	금100,000원	
1학점~3학점	해당학기 등록금의 1/6 해당액	
4학점~6학점	해당학기 등록금의 1/3 해당액	
7학점~9학점	해당학기 등록금의 1/2 해당액	
10학점 이상	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	

※ 관련근거: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 제4조, 「한경대학교 학사운영 규정」 제11조

4. 향후 추진일정 등

○ 향후 추진일정

내용	기간	세부 내용
신청기간	'20. 7. 21.(화) ~ '20. 7.23.(목)	신청자 학사지원팀 방문접수
수강신청	'20. 8. 5.(수) ~ '20. 8. 7.(금)	종합정보시스템 신청(학생본인)
등록금납부	'20. 8. 25.(화) ~ '20. 8. 31.(월)	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은행에 납부(또는 카드납부)

○ 기타사항

-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 중 별도의 휴학신청 불가
-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유예 신청을 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시기의 졸업자로 처리

끝.